

2017년 단체협약 개정 주요내용

1. 2017년 단체협약 개요 (단협 체결일 : 2017.11.13.)

□ 개정이유

- 단체협약 기간 만료(2015.7.9~2017.7.8, 2년)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 필요

□ 조문 구성

- 전문, 본문 117개(현행 77개, 수정 33개, 신설 7개 조항), 부칙 6개 조항

2. 주요내용

□ 단체교섭권

- (제7조 단체교섭권) “유일한” 문구 삭제, 법 위반사항 개선

□ 인사의 원칙

- (제34조 인사제도 개선 등) 효율적인 인사·조직관리를 위하여 직급체계 개선 방안 마련
- (제42조 양성평등과 모성보호)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, 성별에 의한 차별 철폐 및 혼인·출산 등의 이유로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

□ 휴직

- (제52조 휴직기간의 처리)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

□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

- (제62조 연구환경 안정화) 조합원의 1인 1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 신설
- (제63조 개인정보의 수정과 폐기) 개인정보 수정과 폐기에 관한 원칙 명시 조항 신설
- (제64조 감시장비의 설치 금지) 감시장비 설치 금지 원칙 신설, 안전·보안을 위한 장비만 설치·운영

□ 휴가

- (제76조 특별휴가) 경조사 휴가 중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에서 3일로 확대 등

□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

- (제81조 연장·휴일·야간근무) 휴일업무 또는 출장으로 인한 휴일 근무에 대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조항 신설

□ 재해 및 보상

- (제82조 직업병) 직업병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및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 추가

□ 안전과 보건

- (제90조 건강진단 및 이의제기) 정신건강(직무스트레스 진단 등) 증진을 위한 노력한다는 조항 등 신설

□ 후생 및 교육훈련

- (제97조 경조금 확대)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출산경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 지급 명시
- (제106조 출퇴근버스 운영) 출퇴근 편의성을 위해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 증편 등에 관한 내용 명문화
- (제107조 동호회 지원) 동호인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 명문화
- (제117조 창의연수) 연차휴가 사전적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창의연수제도 단체협약에 명문화 및 제도 개선사항 구체화 명시